

##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6년 8월 24일 규칙 제79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보상금 지급기준)** 오산시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(제2조 관련)

### 1. 홍보활동비

구분	시간	지급액
홍보활동	4시간 이내	1백만원
	4시간 초과~8시간 이내	2백만원
	8시간 초과	3백만원

### 2. 홍보영상 출연료

구분	횟수	지 급 액
홍보용 동영상	1	3백만원
광고(CF)	1	광고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지급